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22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시장
- 나. 제안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가. 제안이유

- 2019. 7. 25.字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국장을 마을공동체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9. 28. ~ 10. 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2019. 7. 25.字)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함)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현재, 위원회 위원은 도시공간, 마을활동, 마을교육, 사회경제 등의 분야로 나누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위원 5명, 위촉직 위원 17명으로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연번	분야	성명(연령)	현 직	주요 경력	위촉기간	비 고 (당연직, 위촉직)
1	도시 공간	송창석(58)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양대 행정학박사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2	도시 공간	안현찬(40)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3	마을 활동	성낙경(50)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대표	이화여자대미술 대학원 석사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4	마을 활동	정정애(51)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관장	(사)서울문화네 트위크 대표이사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5	마을 교육	이혜령(47)	밝은작은도서관	강북구혁신교육 지구 틈새돌봄사업팀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6	마을 교육	정은영(47)	협치강동구회의 마을공동체활성화 분과장	-	2018. 2. 13. ~ 2021. 4. 28.	위촉직
7	사회 경제	신동현(50)	(사)한국사회 환경협회	-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8	사회 경제	문헌규(42)	(주)에어블랙 대표 現서울시 예산참여위원	서울시 일자리기획가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9	공공 문화	이순임(55)	도봉문화정보 도서관 관장	초록나라도서관 관장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10	모금 활동	공웅재(41)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교육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 원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연번	분야	성명(연령)	현 직	주요 경력	위촉기간	비 고 (당연직, 위촉직)
11	여성	권정화(68)	마을발전소 할머니밥상(활동)	주부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12	주거	이태중(61)	영어강사	도시계획가 (생태환경)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13	홍보	임한결(26)	우리미래 창년정책국장	서울시 예산참여 위원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14	주민 자치	곽현근(56)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15	주민 자치	이영재(48)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	2018. 4. 29. ~ 2021. 4. 28.	위촉직
16		송재혁	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2018. 7.30~	위촉직
17		김경우	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2018. 7.30~	위촉직
18		김원이	정무부시장	-	재임기간	당연직
19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	재임기간	당연직
20		배형우	복지기획관	-	재임기간	당연직
21		김태균	행정국장	-	재임기간	당연직
22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	재임기간	당연직

-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참석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운영실적〉

- 2019년 운영실적: 총 1회

회차	개최일시	안건 및 심의내용	
34	2019. 2. 13.	안건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추진 계획 보고 ○ 2019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계획 보고 ※ 신입위원(정은영) 위촉
		심의내용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종합센터 사업계획 심의 등

○ 2017년 운영실적: 총 3회

회차	개최일시	안건 및 심의내용	
27	2017. 1. 18.	안건	○ 2017년도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 및 사업 계획 설명 ○ 2017년도 각 실·국·본부 마을사업 추진 계획 설명 ○ 2017년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예산 설명 및 사업 계획 심의
		심의내용	○ 전략적인 마을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율 증대 방안 마련 ○ 실·국·본부 마을사업에 대한 통합 협력 체계 구축
28	2017. 7. 4.	안건	○ 2017년도 상반기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 향후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주제 및 운영 방향 논의
		심의내용	○ 실·국·본부 마을사업에 대한 통합 협력 체계 구축 - 실무회의 정례화 - 공모시기 조정, 통합설명회 개최 등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비전만들기TF 운영
29	2017. 11. 7.	안건	○ 2018년도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센터 예산편성(안) 보고 ○ 2018년도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센터 사업계획(안) 보고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심의
		심의내용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공간운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 ○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심의 : 원안가결

○ 2018년 운영실적: 총 4회

회차	개최일시	안건 및 심의내용	
30	2018. 1. 31.	안건	○ 3기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방향 논의 ○ 2018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추진 계획 보고 ○ 2018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계획 보고
		심의내용	○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한 일반시민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여 확대 방안
31	2018. 4. 11.	안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 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위촉식 별도 진행
		심의내용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사)마을과 재계약 적정성 심의
32	2018. 5. 28.	안건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심의내용	○ 2기 기본계획 방향 및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33	2018. 10. 23.	안건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공동위원장(위촉직) 선출 - 2018. 10. 18. 김정열 위원장 해촉 (개인사유) ○ 2018년 마을주간 개최결과 보고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센터 사업 및 예산(안) 보고
		심의내용	○ 위원장(위촉직)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이순임, 부위원장 문헌규 선출

-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등이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관련기관
마을활력소 조성·운영지원	공유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확충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찾동 마을계획	동단위에서 주민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자치구 지역 특성과 주민 활동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의 사회문제해결, 로컬랩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정의하고, 민·관 협력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로컬랩 사업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사업	주민이 내 주민세(개인균등)를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정책연구 및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등	마을자치 정책 개발과 현장실천형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단위 기업육성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과
마을예술창작소	생활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간사업	문화정책과
부모커뮤니티	공통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마을미디어 활성화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 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	문화예술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에너지시민협력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아파트단지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사업	공동주택과

- 안 제15조제3항은 조직 개편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혁신관련 부서 국장”을 “마을공동체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u>	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당연직위원은 동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당초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에 있는 마을공동체 업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업무 유관성 및 참석률 등을 고려한 당연직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별 참석실적〉

년도	이름	소속 및 직위	회의 참석 현황			비고
			개최횟수	참석횟수	출석률	
2017년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3	2	66%	위촉직
2017년	김연순	행복중심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장	3	2	100%	위촉직
2017년	김성섭	서울시마을기업 연합회 좌장	3	3	100%	위촉직
2017년	권태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3	2	66%	위촉직
2017년	이현주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대표	3	3	100%	위촉직
2017년	송문식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3	3	100%	위촉직
2017년	성낙경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운 영위원회 대표	3	2	66%	위촉직
2017년	김종욱	정무부시장	3	2	66%	당연직
2017년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3	1	33%	당연직
2017년	황인식	행정국장	3	3	100%	당연직
2017년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3	2	66%	당연직
2017년	한영희	복지기획관	3	3	100%	당연직
2017년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3	3	100%	당연직
2018년	공웅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4	1	25%	위촉직
2018년	권정화	마을발전소 할머니밥상	4	2	50%	위촉직
2018년	문현규	(주)에어블랙 대표	4	2	50%	위촉직
2018년	신동현	(사) 한국사회환경협회	4	2	50%	위촉직
2018년	이순임	도봉문화정보 도서관 관장	4	2	50%	위촉직
2018년	이태종	영어강사	4	2	50%	위촉직
2018년	이혜령	밝은 작은도서관	4	2	50%	위촉직
2018년	임한결	우리미래 청년정책국장	4	0	0	위촉직

2018년	정정애	배봉꿈나무 청소년 독서실관장	4	2	50%	위촉직
2018년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	0	0	위촉직
2018년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의원	4	1	25%	위촉직
2018년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동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4	1	25%	위촉직
2018년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4	1	25%	위촉직
2018년	성낙경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	4	4	100%	위촉직
2018년	진성준	정부부시장	4	1	25%	당연직
2018년	황인식	행정국장	4	4	100%	당연직
2018년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4		75%	당연직
2018년	한영희	복지기획관	4	1	25%	당연직
2018년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4	2	50%	당연직
2018년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2	2	100%	당연직
2019년	공웅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	1	100%	위촉직
2019년	권정화	마을발전소 할머니밥상	1	1	100%	위촉직
2019년	문현규	(주)에어블랙 대표	1	0	0	위촉직
2019년	신동현	(사) 한국사회환경협회	1	1	100%	위촉직
2019년	이순임	도봉문화정보 도서관 관장	1	1	100%	위촉직
2019년	이태종	영어강사	1	1	100%	위촉직
2019년	이혜령	밝은 작은도서관	1	0	0	위촉직
2019년	임한결	우리미래 청년정책국장	1	0	0	위촉직
2019년	정정애	배봉꿈나무 청소년 독서실관장	1	1	100%	위촉직
2019년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0	0	위촉직
2019년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의원	1	1	100%	위촉직
2019년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동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교수	1	1	100%	위촉직
2019년	정은영	협치강동구회의 마을공동체활성화 분과장	1	1	100%	위촉직
2019년	-	정무부시장	1	0	0%	당연직
2019년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1	1	100%	당연직
2019년	황인식	행정국장	1	0	0	당연직
2019년	정유승	주택건축본부장	1	0	0	당연직
2019년	배형우	복지기획관	1	1	100%	당연직

-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의 이관 당위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 개정조례안과 더불어 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2.>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8. 1., 2016. 1. 7.>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2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019. 7. 25.자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국장을 마을공동체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9. 8. 16. ~ 9. 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을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구성)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u></p> <p>④ (생 략)</p>	<p>제1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u>-----.</p> <p>④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02-2133-6334)